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01월21일

이 천 시 장



1. 공고내용 : 건축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, 원상복구 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
2. 공고기간 : 2022.1.24. ~ 2022.2.4.(14일간)
3. 공고장소 :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
4. 관련법규 : 「건축법」 제79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5. 공시송달 대상 : 별첨
- 6-1. 원상복구 시정명령
 - 상기 「건축법」 위반사항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통보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(연락)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내용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주택과(☎031-644-24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반건축물 시정명령

건축주	대지위치	위반내용	처분내용	위반 규정
조*한	모가면 소사리 282-4	○ 임시화장실/무단가설/3.57㎡/조립식패널조 ○ 임시창고/무단가설/6.27㎡/임시창고	위반건축물 시정명령	건축법 제20조
㈜*은	모가면 양평리 257-2	○ 임시창고/무단가설/18㎡/컨테이너조	위반건축물 시정명령	건축법 제20조
원*수	모가면 소고리 405-6	○ 임시창고/무단가설/100㎡/철파이프조	위반건축물 시정명령	건축법 제20조
원*수	모가면 양평리 113-5	○ 단독주택/무단신축/40.4㎡/컨테이너조, 경량철골조	위반건축물 시정명령	건축법 제20조

6-2.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

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)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며(신청자격 :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사람),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(www.simpan.go.kr)에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가 게재되어 있습니다. 끝.

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

건축주	대지위치	위반내용	금 액	처분내용	위반 규정
김*자	부발읍 무촌리 산48-9	○ 단독주택/무단중축/129㎡/시멘트블록조 ○ 단독주택/무단중축/43㎡/판넬구조 ○ 단독주택/무단중축/34㎡/판넬구조	3,853,000	이행강제금 부과	건축법 제11조 제14조
경*호	부발읍 아미리 728-7	○ 근린생활시설/무단중축/13.5㎡/경량철골조	2,089,000	이행강제금 부과	건축법 제14조
이*순	부발읍 무촌리 170-1	○ 단독주택/무단중축/18.74㎡/철파이프조 ○ 단독주택/무단중축/26.25㎡/판넬구조 ○ 단독주택/무단가설/5.6㎡/철파이프조	1,310,000	이행강제금 부과	건축법 제14조 제20조